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41회 제2차정례회 제1차위원회(2008. 12. 03)

제141회 제2차정례회 제3차위원회(2008. 12. 05)

제141회 제2차정례회 제4차위원회(2008. 12. 08)

제141회 제2차정례회 제5차위원회(2008. 12. 09)

제141회 제2차정례회 제6차위원회(2008. 12. 10)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나. 제출내역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년도	2009년	2008년	증감액	증감율(%)
합계		40,317,101	42,489,283	△2,172,182	△5.11
통합관리기금	2007	22,973,688	24,362,974	△1,389,688	△5.7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3,522,000	3,553,359	△31,359	△0.8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96	988,001	1,001,680	△13,679	△1.37
기초생활보장기금	2003	176,566	457,672	△281,106	△61.42
노인복지기금	1997	27,903	46,607	△18,704	△40.13
여성발전기금	2006	575,918	838,300	△262,382	△31.30
장학기금	2008	2,149,400	2,044,600	104,800	5.1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488,112	407,931	80,181	19.66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239,305	229,071	10,234	4.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99	601,043	1,077,980	△476,937	△44.24
마포구자원회수 시설 관련기금	2006	5,008,713	5,501,260	△492,547	△8.95
도로굴착복구기금	1997	2,340,843	1,605,000	735,843	45.85
재난관리기금	1997	728,129	772,839	△44,710	△5.79
식품진흥기금	2001	497,480	590,010	△92,530	△15.68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황은 제외.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 승 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4개 기금에 403억 1,710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5.11% 감소(21억 7,218만 2천원)한 규모임.

- 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 5,095만 4천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융자금 회수 24억 4,464만 2천원, 예탁금상환금 37억 6,356만원, 예치금회수 273억 2,066만 5천원, 예수금 5억 4,700만원, 이자 수입 27억 597만 8천원, 기타수입 24억 5,930만 2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7,993만 4천원, 융자금 37억 7,800만원, 물건비 798만원, 예탁금 5억 4,700만원, 예치금 250억 1,940만 9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8억 8,477만 8천원 등으로 운용할 예정임.
-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이중 계상된 213억 547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13개 기금의 운용 순계액은 273억 2,066만 5천원임.
- 기금별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에 24억 5,000만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민간융자금에 7억 5,000만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민간위탁금으로 2천 6백만원
 - 여성발전기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천 5백만원
 - 장학기금은 장학금으로 4,460만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융자에 1억 7,800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일반운영비 1억 863만 2천원
 -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청소시설 정비 시설비로 2,000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자치단체등 이전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2억 359만 2천원
 -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0억원
마포 보육종합정보센터 토지매입비로 2억 6,500만원
마포 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비 13억 8,9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설비 15억원, 감리비 8,000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역지변 설치 1억 5,000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 사업비로 1억원 등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이 요구됨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기금의 자원 조달 목적과 집행 사업간의 적합성 여부,
 - 기금지출대상 사업이 아닌 부문에 대하여 기금을 지출한 목적 외 지출 여부,
 - 기금 재원이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동시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만 기금을 조성·운용함이 타당함에도 민간경상보조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과 같은 단순한 경상적 지출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지출할 대상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자원조성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기금융자사업들이 불합리한 용자조건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 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